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- 600호

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·상점가,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, 지방정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10월 20일

중소벤처기업부 장 관

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원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**본 사업공고**는 '27년 예산 확정 시 **최종 지원 대상 확정(27.1월 예정)**

사업명	지원내용	지원한도	지원조건
전통시장육성 (문화관광형)	○ **(목적)** 지역 문화·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 - **(내용)** 지역특색과 연계한 투어코스, 관광콘텐츠, 지역특산물 PB상품 개발 등 지원	시장당 최대 20억원 (3년간)	▪ 국비: 50% ▪ 지방비: 50% (단,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차등지원)
시장경영지원	○ **(목적)**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생력 제고 - **(내용)** 역량강화(상인교육, 경영자문), 인력지원(시장매니저, 배송매니저)	시장당 최대 45백만원 (1년간)	▪ 국비: 80% 이하 ▪ 지방비·자부담: 20% 이상 * 자부담은 지방정부 부담 가능
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	○ **(목적)**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별 위험요인에 맞는 안전시설물 설치 지원 - **(내용)** 사회·자연재난 대비 안전시설물 설치 지원	점포당 최대 5백만원 (1년간)	▪ 국비: 70% ▪ 지방비·자부담: 30% * 자부담은 지방정부 부담 가능

사업명	지원내용	지원한도	지원조건
지역상품 전시회 지원	○ (목적) 지역 전통시장·상점가 우수상품의 전시·홍보 지원을 통한 활성화 지원 - (내용) 온오프라인 전시회 기획·운영 직접비용 지원	선정 지회당 국비 최대 40백만원	▪ 국비: 50% 이하 ▪ 지방비·자부담: 50% 이상 * 자부담은 지방정부 부담 가능
전국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	○ (목적) 전국우수시장박람회 행사 운영에 적합한 인프라·지원역량을 갖춘 개최지 선정 - (내용) 정부포상수여식, 대규모 공연, 전시홍보, 먹거리 등 150개 부스 운영 등	국비 최대 5억원	▪ 지방비 최소 3억원 이상 부담

3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

1 사업개요

□ **사업목적 :** 화재·폭발 등 사회재난과 폭염·수해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별 위험요인에 맞는 안전시설물 설치 지원

□ **지원대상 :**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·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

□ **지원내용 :** 사회·자연재난* 대비 안전시설물 설치 지원

* (사회재난) 전기, 소방, 가스, 기타 / (자연재난) 폭염, 수해, 태풍, 폭설

○ **(사회재난)** 화재·폭발·인파사고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전기·소방·가스·기타분야 안전시설물 설치 지원

○ **(자연재난)** 폭염·수해·태풍·폭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예방 안전시설물 설치 지원

□ **지원규모 :** 300곳 내외

* '27년 예산확정규모 및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 및 지원 규모 등 변동 가능

□ **지원예산 :** 개별점포 당 총사업비 최대 5백만원 지원

○ **(매칭비율)** 국비 70%, 지방비·자부담 30%(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)

○ **(지원한도)** 신청점포 수 × 점포당 최대 5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

□ **사업기간 :** 최종 선정일로부터 '27년 12월까지

□ **추진체계:** 지방정부(시·도, 시·군·구)가 신청, 집행 등을 추진하고, 중기부·소진공에서 공고·접수·평가 등 추진

2 자격요건

□ **지원대상** :「전통시장법」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·상점가·골목형 상점가·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

① 영업점포의 30%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신청한 곳

※안내 사항

- 단, 중기부 '전통시장 안전점검' 결과 분야별 안전등급이 D, E등급인 시장의 경우 안전등급 분야와 동일 분야 신청 시 **신청점포 수 조건 없이 개별점포 단위 신청 가능**
- 안전등급 확인 방법: (소방·가스 분야) '소상공인 24'에서 지방정부 담당자 확인 가능
  (전기분야)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중기부·소진공에서 직접 확인

②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50%* 이상인 곳

* 개별점포 신청의 경우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 필수(접수 마감일 기준)

※지원 제외

- 접수 마감일 기준('26.11.16.)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, 과태료 처분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('26.11.16.)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회
- 접수 마감일('26.11.16.) 기준 중기부, 소진공으로부터 '사업 참여제한' 처분을 받고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
-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에 따른 제재를 받은 경우

□ **지원조건** : 국비 70%, 지방비·자부담 30%(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)

○ **(지원한도)** 시장별 총사업비는 신청점포 수 x 5백만원 이내로 산정

○ **사업비 편성 시 유의사항**

- **(공통)** 신청 점포 수 x 최대 500만원을 기준으로 사업비 편성
- **(통합편성)** 공용구간, 개별점포 단위 구분 없이 시장 통합 개선 가능

※안내 사항

- 동일 점포가 복수 분야를 신청하더라도 신청점포 수는 1개 점포로 산정
- 신청점포 수 기준 산정액을 초과하는 사업비가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 및 선정·심의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, 사업비 적정성, 예산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인정 가능

3 지원내용

※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부문 제한 없이 신청시장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 수립하여 추진

□ **(안전시설물 설치)** 화재·폭발 등 사회재난과 폭염·수해 등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시설물 개선·설치 지원

○ **(사회재난분야)** 화재·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·소방·가스·기타 안전시설 개선 지원

○ **(자연재난분야)** 폭염·수해·태풍·폭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 개선 지원

지원유형		사업 내용
사회재난	소방	▸ 화재알림시설(감지기, 수신기, 속보기 등), 소화기 등 소방 시설 개선
	전기	▸ 차단기, 분전반, 배선, 콘센트 등 전기 시설 개선
	가스	▸ 가스 보관함, 가스누출 경보기, 가스차단기 등 가스 시설 개선
	기타	▸ 스마트안전기술(AI 화재감시 CCTV, 지능형출동시스템, 원격전기점검 등)
자연재난	폭염	▸ 쿨링포그, 이동식 냉풍기, 차양막, 차열시설 등 폭염 저감·온열질환 예방시설
	수해	▸ 차수판, 배수펌프, 배수로 정비, 누수 방지시설 등 침수·강우 피해 예방시설
	태풍	▸ 강풍 대비 고정장치 보강, 낙하·비산 위험시설 정비, 외부 부착시설 안전조치 등
	폭설	▸ 제설함, 결빙 취약구간 개선시설 등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시설

* 지원품목은 예시이며, 명시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안전사고 예방 또는 재난피해 예방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·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

□ **(취약시장 개선)** 중기부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D·E시장* 또는 개선이 필요한 시장은 우선 지원

* 지방정부 담당자가 '소상공인 24' 또는 중기부·소진공을 통해 확인 가능

○ 점검결과 개선 필요사항 관련 분야 신청 시 현장평가를 면제하고, 서면평가·선정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정

□ 지원내용 가이드라인

○ 사업계획서는 단순 품목 나열이 아니라 시장의 위험요인, 개선 필요성, 설치 위치, 수혜범위, 산출근거, 유지관리 계획을 중심으로 작성

구분	작성기준
공통	▸ 신청분야별 위험요인, 현장사진, 점검결과, 피해이력, 수혜점포, 설치 위치, 물량·단가·산출근거, 유지관리 주체를 구체적으로 작성 - 지원품목은 예시 품목에 한정하지 않으며, 안전사고 예방 또는 재난피해 예방 목적이 명확한 경우 신청 가능
전기	▸ 분전반·차단기·배선·콘센트 등 전기설비 노후도, 전기안전등급, 누전·과부하 위험, 설계·검수 자문계획을 중심으로 작성 - 분전반, 차단기, 배선, 콘센트, 접지, 원격전기점검 등 전기안전 확보 효과가 있는 시설 중심으로 신청 가능
소방	▸ 화재감지·통보·초기진화·피난안전 확보 필요성, 기존 소방시설 설치현황,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작성 - 화재알림시설, 감지·통보설비, 초기진화설비, 피난유도설비 등 화재대응 기능이 있는 시설 중심으로 신청 가능
가스	▸ 가스사용 점포 현황, 누출·폭발 위험요인, 노후배관·차단장치·보관함 개선 필요성, 전문업체 시공 및 사후관리 계획 작성 - 가스누출경보기, 가스자동차단기, 금속배관, 가스보관함, 안전밸브류 등 가스안전 확보 시설 중심으로 신청 가능
기타	▸ AI 화재감시 CCTV, 지능형출동시스템 등은 도입 필요성, 운영주체, 유관기관 협조, 데이터 관리 및 유지관리 계획 작성 - AI 화재감시 CCTV, 지능형출동시스템, 안전표지, 추락·전도방지시설 등 현장 맞춤형 안전시설 신청 가능
폭염	▸ 온열질환 예방, 이용객 대기공간 보호, 고령상인 밀집구간 등 폭염 취약구간 개선 필요성을 중심으로 작성 - 쿨링포그, 이동식 냉풍기, 차양막, 그늘막, 차열시설 등 폭염 저감 효과가 있는 시설 신청 가능
수해	▸ 집중호우, 침수, 누수, 배수불량 등 과거 피해이력과 취약구간 개선 필요성을 중심으로 작성 - 차수판, 배수펌프, 배수로 정비, 집수정 보완, 우수관·홈통 보수, 역류방지시설 등 피해예방 시설 신청 가능
태풍	▸ 강풍에 따른 낙하·비산, 외부 부착시설 파손, 고정불량 시설물 등 위험요인 개선 필요성을 중심으로 작성 - 고정장치 보강, 낙하·비산 위험시설 정비, 외부 부착시설 안전조치, 강풍 취약시설 보강 등 신청 가능
폭설	▸ 폭설·결빙에 따른 낙상사고, 통행장애, 적설 취약시설 피해 예방 필요성을 중심으로 작성 - 제설함, 미끄럼방지시설, 경사로·출입구 낙상방지시설, 적설 취약시설 보강 등

○ 편의시설(아케이드, 사무실, 화장실 등)의 교체는 불가

4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**신청주체** : 지방정부

□ **신청기간** : 공고일로부터 '26년 11월 16일(월) 18시까지 제출

* 가급적 마감일 2~3일 이전에 미리 신청 완료하는 것을 권고

□ **신청방법** : 신청기간 내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

* 세부 신청방법은 (별첨3) 파일의「참고3 사업신청접수·승인 절차 매뉴얼」참고

< 온라인 신청·접수절차 >

①기초지방정부 담당자(온라인 신청) → ②광역지방정부 담당자(검토→신청승인→공문발송*) → ③공단(접수)

* (별첨3) 파일의「붙임6 접수시장리스트」작성 후 공단으로 공문 발송 필요

1) **(회원가입)** 지방정부 담당자는 소상공인24에 공무원 인증 후 회원가입

* 단, 담당자 변경 시 공단에 별도 요청하여 인수인계 처리

2) **(사업신청)** 기초지방정부 담당자는 소상공인24 지원사업신청-공고조회 클릭하여 지원하고자하는 사업의 '공고명' 검색 후 지원시장 정보 입력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

- 사업관계자 직인이 전부 날인된 원본 신청서·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에 필요한 붙임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란에 업로드

* 온라인 신청 첨부파일에 필수항목 첨부파일 미첨부 시 사업신청 불가

** 공고 기한 내 공단 담당자에게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 (단, 신청사이트 오류로, 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단 담당자와 협의 후 공문접수)

3) **(서류검토·승인)** 광역지방정부 담당자는 기초지방정부가 신청한 시장별 온라인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 검토 및 승인

(1) 공고 기한 내 광역 지방정부는 전자문서(온나라) 시스템 신청 내역 기준으로 접수 처리 필수

(2) 첨부파일은 '소상공인24'시스템을 통해 제출처리(단, 신청사이트 오류로 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단 담당자와 협의 후 접수)

4) **(공단 접수)** 공단본부의 검토 후 최종 제출된 시장별 신청서 최종 접수완료(공단은 필요시 보완요청 가능)

5 평가내용 및 향후절차

□ **평가개요 :** 현장평가, 서면평가, 가·감점지표 평가 통해 최종 선정

< 평가절차별 주요 평가내용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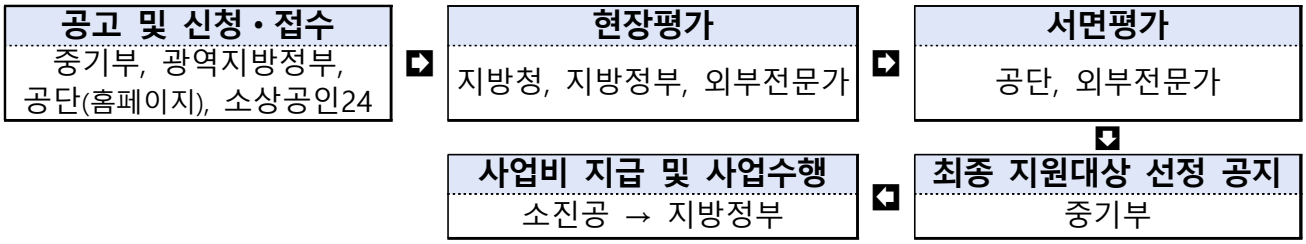
구분	배점	내용
현장평가	**70점**	시설 안정성, 사업 타당성, 사업 계획의 충실성 등
서면평가	**30점**	사업 필요성, 타당성, 추진 가능성, 유지계획 적정성, 사업효과
가·감점평가	**최대 ±10점**	(가점) 화재공제 가입률, 풍수해보험 가입률, 온누리 상품권 가맹률 등 (감점) 안전 점검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립하지 않은 곳 등

○ **(가·감점사항)** 가점(최대 10점)은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미제출 시 추후 별도 보완절차 없이 불인정 처리(서류평가 시 적용)

구분	세부내용	
가점	- 안전관리 우수시장·상점가 선정시장**(10점)** -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가맹률이 높은 곳**(3점)** *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 점포는 비율 산출시 제외 [증빙必] - 최근 3년('24년~'26년)간 노후전선 정비·화재알림시설 설치·안전관리패키지 지원이력이 없는 곳**(5점)** 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60조에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방정부에 소속된 곳**(2점)** -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(중기부 화재안전점검 결과 소방·가스·전기등급 C등급 이하)**(5점)** - 화재감지기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(노점 제외, 빈 점포 제외)의 60% 이상인 곳**(2점)** - 화재공제(보험)의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정부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곳**(2점)** - 화재공제(보험)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(노점·빈 점포 제외) 대비 60% 이상인 곳**(2점)** - 풍수해보험(6형)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(노점 제외, 빈 점포 제외) 대비 30% 이상인 곳(해당 시장의 경우,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)**(2점)**	**최대 10점**
감점	-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 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**(△10점)** - '24년~'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곳**(△5점)** * 단,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'지방비 확보 불가' 사유로 포기한 경우 1년 - '24~'26년 법령 및 세칙 위반, 감사원, 공단 등에서 지적을 받은 경우**(△10점)**	**최대 10점**

*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

□ 향후절차(안) ※ **추진일정은 대내·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추후 안내**



6 유의 사항

◈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

① 본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"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"이 적용되며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**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**이 부과됩니다.

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**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**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 등 관련자 전원이 **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**될 수 있습니다.

□ 공통사항

○ 영업점포 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영업 중인 점포를 기준으로 하며, 노점과 빈 점포는 제외

○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점포는 신청 가능하나, 현장평가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기한 내 미제출 시 대상 제외

○ 지원시장 선정 후 사업 중도 포기 시 교부된 사업비, 발생이자 등은 관계 규정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

○ 신청점포 수는 동의서를 제출한 점포수를 기준으로 산정

○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운영세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 지방정부, 시장 등에 있음

□ 지원품목 및 집행 유의사항

○ 지원품목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시장별 위험요인과 현장수요에 맞게 신청할 수 있으며, 평가·심의 과정에서 지원목적 부합 여부를 검토

○ 공고문에 열거되지 않은 품목도 안전사고 예방 또는 재난피해 예방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

○ 전기·소방·가스 등 법정 기준이 적용되는 시설은 관련 법령·검사 기준에 적합 설치 의무

□ 화재알림시설 등 사후관리

○ 감지기, 수신기, 속보기, 통신장비, 관제서버, 문자·앱·알림 등 주요 기능이 설치 후 지속적으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과업범위를 명확히 설정

○ 관리자 계정, 장비정보, 알림 수신자 현황, 유지보수 연락처 등 운영자료는 사업 완료 시 상인회 및 지방정부에 인계하도록 명시

○ 유지보수 업체 변경, 관리자 변경 등으로 화재알림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자료 인수인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포함

□ 전기분야 전문가 자문 의무화

○ 전기분야 사업 추진 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자문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내 자문수당 포함 필수(사업 설계 및 검수 시 자문, 총 2회)

< 자문수당 책정기준 >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사업 설계 시</th><th colspan="2">시공 후 검수 시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시장단위</td><td rowspan="3">시간당 11만원
(최대 33만원 이내)</td><td>점검점포 100개 미만</td><td>점포당 6.6만원</td></tr>
<tr><td>점검점포 100~200개 미만</td><td>점포당 5.5만원</td></tr>
<tr><td>점검점포 200개 이상</td><td>점포당 4.4만원</td></tr>
<tr><td>개별점포단위</td><td>점포당 7만원</td><td colspan="2">점포당 7만원</td></tr>
</table>

□ 공고문(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포함) 확인 경로

○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www.mss.go.kr) → 사업공고

○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(www.semas.or.kr) → 알림마당→공지사항

○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 →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

7 문의처

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○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지원팀(042-363-7616, 7617, 7618)

□ 지방중소벤처기업청

문의처	전화번호	문의처	전화번호
서울	02-2110-6317	울산	052-210-0045
부산	051-601-5138	강원	033-260-1624
대구·경북	053-659-2280	충북	043-230-5321
광주·전남	062-360-9154	충남	041-415-0639
경기	031-201-6933	전북	063-210-6431
인천	032-450-1140	경남	055-268-2581
대전·세종	042-865-6141		

※ 정부 조직 개편, 지방정부 통폐합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사업관리 주체, 관할 구역 및 세부 기능은 조정·변경될 수 있음

※ 제출서류 및 참고자료 : 별첨3 파일 참조

* 신청서 등 양식에 따라 작성 후, PDF파일로 제출

1) 시장단위

구분	필수여부	서식	제출 서류
1	필수	붙임1	사업 신청서
2	필수	붙임2	사업 계획서
3	필수	붙임3	사업추진 동의서 *** 신청점포 상인 자필 서명 필수(누락 시 미인정)**
4	필수	붙임4	확약서
5	필수	붙임5	개인정보 수집·이용 / 제공 동의서
6	필수	붙임6	접수시장리스트(광역 지방정부 작성)
7	필수	-	전통시장 입증서류**(전통시장 인정서, 대규모점포등록증 등)**
8	필수	-	상인회 입증서류**(상인회 등록증 등)**
9	해당 시	붙임7-1	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
10	해당 시	붙임7-2	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*** 유효기간, 증권번호 등 모두 기재하여 빈칸 없이 제출 필수**
11	해당 시	붙임8	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(설치율 60% 이상일 경우만)
12	해당 시	붙임9	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 현황
13	해당 시	-	화재공제(보험)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증빙
14	해당 시	-	화재공제(보험) 보험료 지방정부 지원 증빙
15	해당 시	-	개별점포 풍수해보험 가입증서
16	해당 시	-	자율안전관리활동 내역 증빙
17	해당 시	-	**사업자등록증(사업자 미등록 점포가 신청한 경우)** *** 접수 마감일 이후 제출 가능하나 현장 평가 전 제출 필수(미제출 시 선정 제외)**

2) 개별점포 단위

※ 안전점검 D,E인 개별점포의 경우 신청 가능

구분	필수여부	서식	제출 서류
1	필수	붙임10	사업 신청서
2	필수	붙임11	사업 계획서
3	필수	붙임12	사업추진 동의서 *** 신청점포 상인 자필 서명 필수(누락 시 미인정)**
4	필수	붙임13	확약서
5	필수	붙임14	개인정보 수집·이용 / 제공 동의서
6	필수	-	전통시장 입증서류**(전통시장 인정서, 대규모점포등록증 등)**
7	필수	-	상인회 입증서류**(상인회 등록증 등)**
8	필수	-	사업자등록증
9	필수	-	화재공제/민간화재보험 증권

참고	1	[참고1] 지원품목 예시	참고자료
	2	[참고2] 지능형출동시스템	
	3	[참고3] 소상공인24 사업신청접수·승인 절차 매뉴얼	